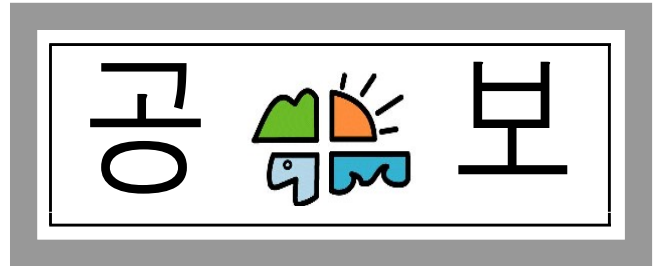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290호 2020년 10월 23일(금)

고 시

-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
-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8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조양_자동차정류장)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... 11
-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2

발행 : 공 보 감 사 담 당 관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799)

●속초시 고시 제2020-149호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아시아신탁(주) 대표 배일규가 시행하는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 및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23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명칭 :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○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: 아시아신탁(주) 대표 배일규
○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, 케이티앤지타워)
3. 사업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외 73필지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업내용	사업비	비고
분양주택	○ 사업면적 - 당 초 : 35,056.00㎡ - 변 경 : 36,048.00㎡ ○ 대지면적 : 27,023.00㎡ ○ 건축연면적 : 92,286.16㎡ ○ 건설규모 : 아파트 2/16~29층 6개동 578세대 외 부대·복리시설	195,817,789천원	

5. 사업시행기간 : 2019.11.01. ~ 2022.05.01.(예정)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○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※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: <붙임 1>
7.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(☎033-639-2773)에 비치하여 일반일이 열람하게 합니다.

<붙임 1>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.1.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37	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	35,056	증) 992	36,048	

1.1.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	면적(m ²)		결 정 (변 경) 사 유
			기정	변경	
변경	37	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	35,056	36,048	•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동주택용지 내에 위치 한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대체시설 설치 를 위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2.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2.1.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35,056	증) 992	36,048	100.0	
주거지역	소계	34,092	증) 992	35,084	97.3	
	제2종일반주거지역	34,092	증) 992	35,084	97.3	
녹지지역	소계	964	—	964	2.7	
	생산녹지지역	532	—	532	1.5	
	자연녹지지역	432	—	432	1.2	

2.1.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	결 정 (변 경) 사 유
		기정	변경		
—	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5,084	•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 동주택용지 내에 위치한 기 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 역 변경
		생산녹지지역	생산녹지지역	532	
		자연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432	

3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3.1. 도로(면적변경)

3.1.1. 도로 총괄표

구분		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
계	기정	4	650 (2,109)	8,033 (25,731)	-	-	-	2	216 (289)	1,989 (3,056)	2	434 (1,820)	6,044 (22,675)
	변경	6	737 (2,719)	8,847 (32,078)	1	54 (257)	546 (3,338)	2	249 (642)	2,257 (6,065)	2	434 (1,820)	6,044 (22,675)
중로	기정	3	440 (1,899)	6,162 (23,860)	-	-	-	1	6 (79)	118 (1,185)	2	434 (1,820)	6,044 (22,675)
	변경	3	440 (1,899)	6,162 (23,860)	-	-	-	1	6 (79)	118 (1,185)	2	434 (1,820)	6,044 (22,675)
소로	기정	1	210	1,871	-	-	-	1	210	1,871	-	-	-
	변경	3	297 (820)	2,685 (8,218)	1	54 (257)	546 (3,338)	2	243 (563)	2,139 (4,880)	-	-	-

- ※ 1) () 안 숫자는 중로 2-25호선, 중로 3-33호선, 소로 1-21호선, 소로2-163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에 대한 수치임
 2) 중로 2-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-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79m 중 6m / 총 면적 1,185m² 중 118m²)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
 3) 중로 3-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1,510m 중 124m / 총 면적 18,447m² 중 1,816m²)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
 4) 소로 1-21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(총 연장 257m 중 54m / 총 면적 3,338m² 중 546m²)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 5) 소로 2-163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(총 연장 353m 중 33m / 총 면적 3,009m² 중 268m²)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
3.1.2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25	15	보조 간선도로	6 (79)	조양69전 중로3-6	조양79도 대로3-1	일반도로	청초천	2007. 11. 2 (강고 제2007-236호)	
기정	중로	3	6	12~15	보조 간선도로	124 (1,510)	조양547-2도 중로1-8	노학1268도 중로1-23	일반도로	청초천	1976. 3. 27 (건고 제37호)	
기정	중로	3	33	12~18	보조 간선도로	310	조양387-2입 소로2-231	조양400-5도 중로3-6	일반도로	속초상 업 고등학 교	1992. 10. 9 (강고 제92-113호)	
기정	소로	1	21	10	국지도로	54 (257)	조양510-21도 중로3-6	조양462전 소로2-163	일반도로		1977. 4. 19 (강고 제77-72호)	
기정	소로	2	231	8.5	국지도로	210	조양460-1도 소로1-21	조양387-2입 중로3-33	일반도로		2019. 6. 20 (속고 제2019-57호)	
기정	소로	2	163	8	국지도로	33 (353)	조양581-2도 대로1-1	조양497-2전 소로1-21	일반도로		1993. 4. 28 (속고 제93-11호)	

- ※ 1)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의 연장이며 ()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임
 2) 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소로1-21호선과 소로2-163호선은 기조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

3.1.3.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기정	중로 2-25	중로 2-25	•연장 및 면적 - 금회 포함 연장 : 6m - 금회 포함 면적 : 118m² •전체 도로 제원 - 연장 : 79m - 폭원 : 15m - 면적 : 1,185m²	•변경사항 없음
기정	중로 3-6	중로 3-6	•연장 및 면적 - 금회 포함 연장 : 124m - 금회 포함 면적 : 1,816m² •전체 도로 제원 - 연장 : 1,510m - 폭원 : 12~15m - 면적 : 18,447m²	•변경사항 없음
기정	중로 3-33	중로 3-33	•연장 및 면적 - 연장 : 310m - 폭원 : 12~18m - 면적 : 4,228m²	•변경사항 없음
기정	소로 1-21	소로 1-21	•연장 및 면적 - 금회 포함 연장 : 54m - 금회 포함 면적 : 546m² •전체 도로 제원 - 연장 : 257m - 폭원 : 10m - 면적 : 3,338m²	•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동주택용지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
기정	소로 2-231	소로 2-231	•연장 및 면적 - 연장 : 210m - 폭원 : 8.5m - 면적 : 1,871m²	•변경사항 없음
기정	소로 2-163	소로 2-163	•연장 및 면적 - 금회 포함 연장 : 33m - 금회 포함 면적 : 268m² •전체 도로 제원 - 연장 : 353m - 폭원 : 8m - 면적 : 3,009m²	•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동주택용지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

- ※ 1) 중로 2-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-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79m 중 6m / 총 면적 1,185m² 중 118m²)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내용을 반영함
- 2) 중로 3-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1,510m 중 124m / 총 면적 18,438m² 중 1,807m²)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조성함
- 3) 소로 1-21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(총 연장 257m 중 54m / 총 면적 3,338m² 중 546m²)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- 4) 소로 2-163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(총 연장 353m 중 33m / 총 면적 3,009m² 중 268m²)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

4.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4.1.1.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 적(㎡)	획 지		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가구번호와 동일	A1	27,023	조양동 415번지 일원	27,023	－	27,023	공동주택용지
	A2	178	조양동 508-11번지 일원	－	증) 178	178	근린생활시설용지

4.2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4.2.1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분		결정내용	비 고
—	A1	용도	허용	•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	
			불허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 폐 율		•60% 이하	
		용 적 륜		•250% 이하	
		높 이		•30층 이하	
		배 치 형 태 색 채	•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		
		건 축 선		•건축한계선 - 공동주택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※ 부대복리시설 제외	결정도 참조
—	A2 (신규)	용도	허용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	민방위급수시설
			불허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 폐 율		•60% 이하	
		용 적 륜		•250% 이하	
		높 이		•1층 이하	
		배 치 형 태 색 채	•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A1 가구의 건축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		
		건 축 선		—	

5.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

5.1. 교통처리계획(변경없음)

5.1.1.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보행동선	단지 내 보행동선	•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
차량동선 및 주차	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	•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·출입 불허
	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	•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

※ “차량출입불허구간”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

※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

－ 버스정류장, 기타 승하차시설,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

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 건설도시과(☎ 033-639-2447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. 10. 21.

속 초 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폐지	4	자동차 정류장	여객자동차터미널 (종합터미널)	조양동 산273임 일원	35,334	감) 35,334	-	2000.10.20. (강고 제2000-222호)	실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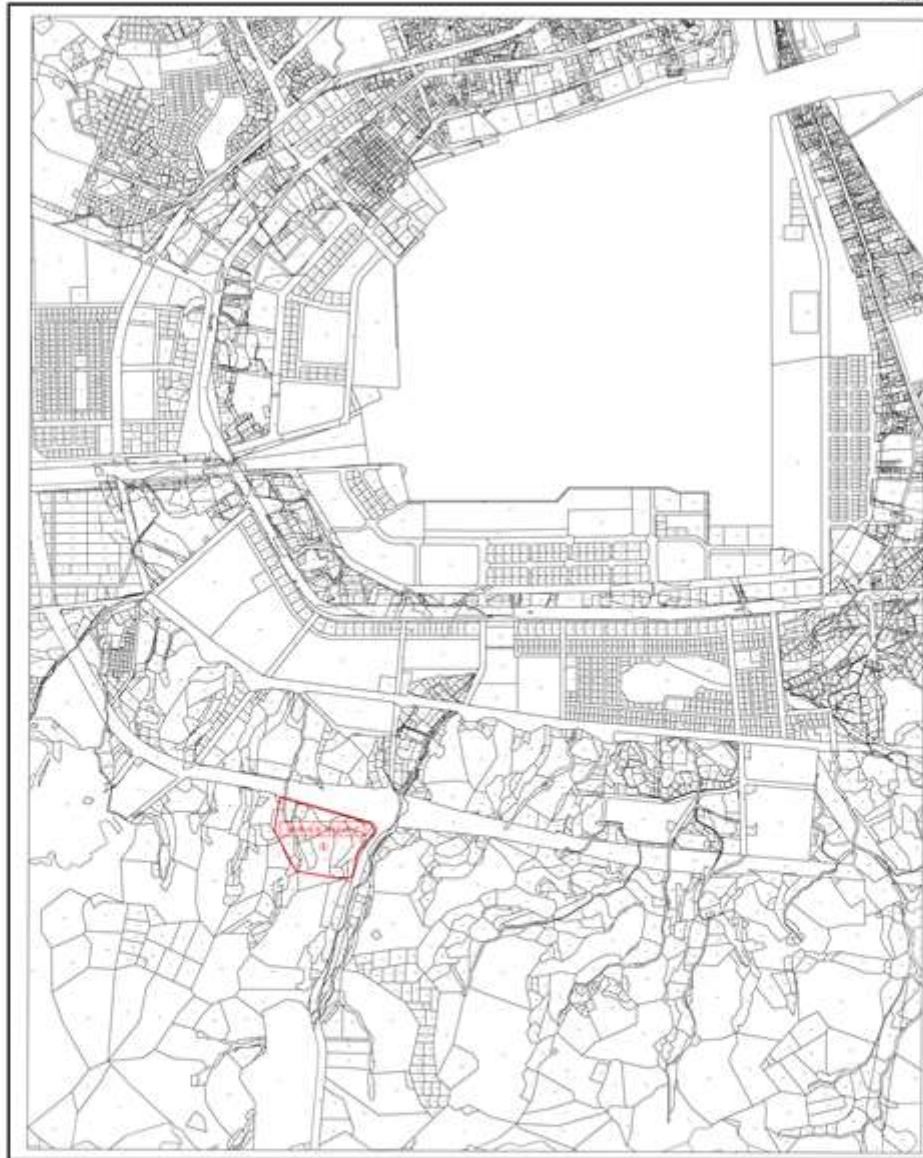
나. 실효일자 : 2020. 10. 21.

다. 실효사유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

라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○기정(속초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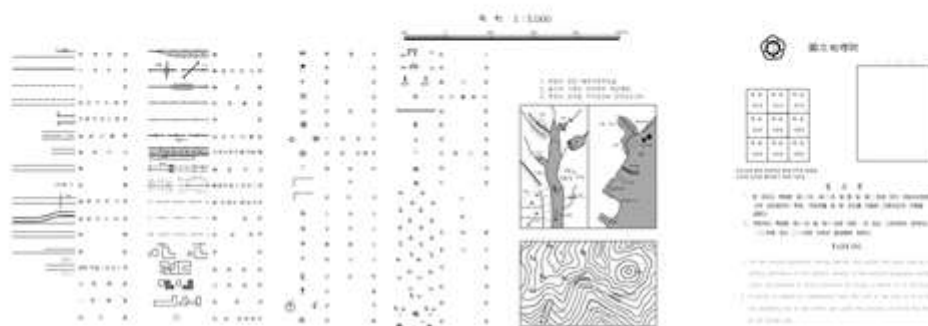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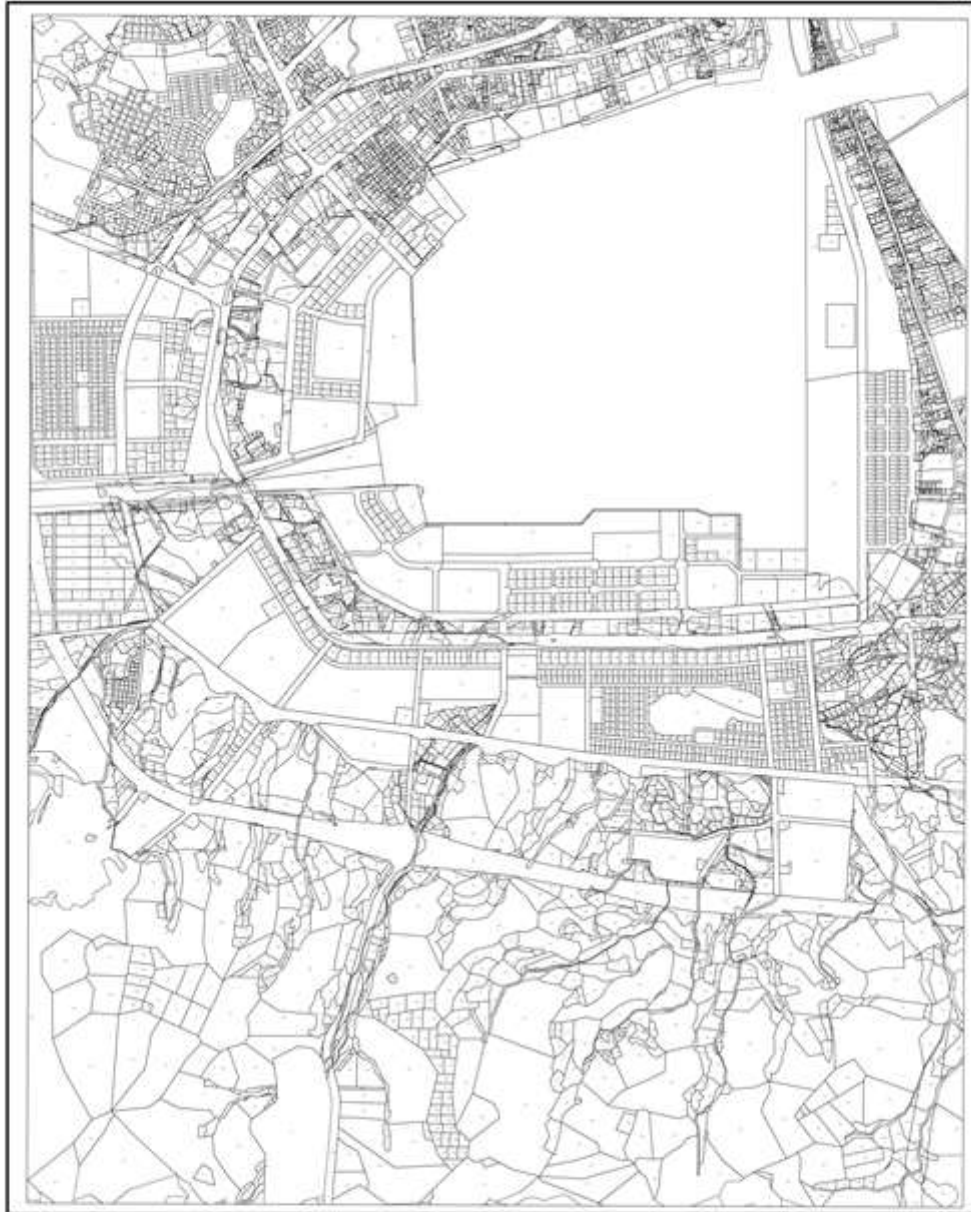
曲-024



○변경(속초24)

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) 결정 실효 지형도면

向:024

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조양_자동차정류장)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21일
속 초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사항

○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제한기간	비고
			기정	변경 후		
1	조양(자동차정류장)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조양동 산273 일원	-	35,334㎡	지정고시일로부터 3년	

2. 제한사유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자동실효된 “자동차정류장”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및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.

3. 개발행위 제한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(단, 1차례 2년 연장 가능, 최장 5년간)

4. 제한대상 행위

- 조양(자동차정류장)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“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”내에서 가능하지 않는 용도 (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서 가능한 용도는 허용 / 자연경관지구는 청대로에서 50m 이내에 한함)

5. 관련도서 비치(관계도면 : 실음생략)

-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(전화 : 033-639-2447)에 비치 열람합니다.

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21일

속 초 시 장

1. 실시계획 개요

가. 사 업 명 :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
나. 사업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-5번지 일원

다. 사업규모

- 토 공 : 흙깎기 $V=5,867\text{m}^3$, 사토 $V=5,151\text{m}^3$, 사면녹화 $A=765\text{m}^2$
- 배 수 공 : L형옹벽측구 및 배수로 설치 등 $L=224\text{m}$
- 구조물공 : 자중식옹벽 $L=115\text{m}(H=1.5\sim 4.5\text{m})$
- 포 장 공 : 아스팔트포장 $A=1,481\text{m}^2$
- 부 대 공 : 안전난간 등 1식

라. 사 업 비 : 2,952백만원

마. 사업기간 : 2020. 10. ~ 2021. 12.

바. 사업시행자 : 속초시장(속초시 중앙로 183, 안전총괄과)

2. 설계도서(설계예산서 포함) :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

3.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: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없음

4. 사업효과 분석
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

5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20년	'21년	'22년 계획	비 고
사업내용	· 실시설계 · 용지보상 · 급경사지정비 · 부대시설	· 실시설계 · 용지보상	· 용지보상 · 급경사지정비 · 부대시설	-	
총 사업비	2,952	200	2,752	-	
· 국 비	1,476	100	1,376	-	
· 도 비	295.2	20	275.2	-	
· 시 비	1,180.8	80	1,100.8		

6.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

가. 정비사업 완료 후 관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도 재평가를 통한 재해위험도 등급 조정과 필요시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

나.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실시

7. 기타사항

-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(☎ 033-639-240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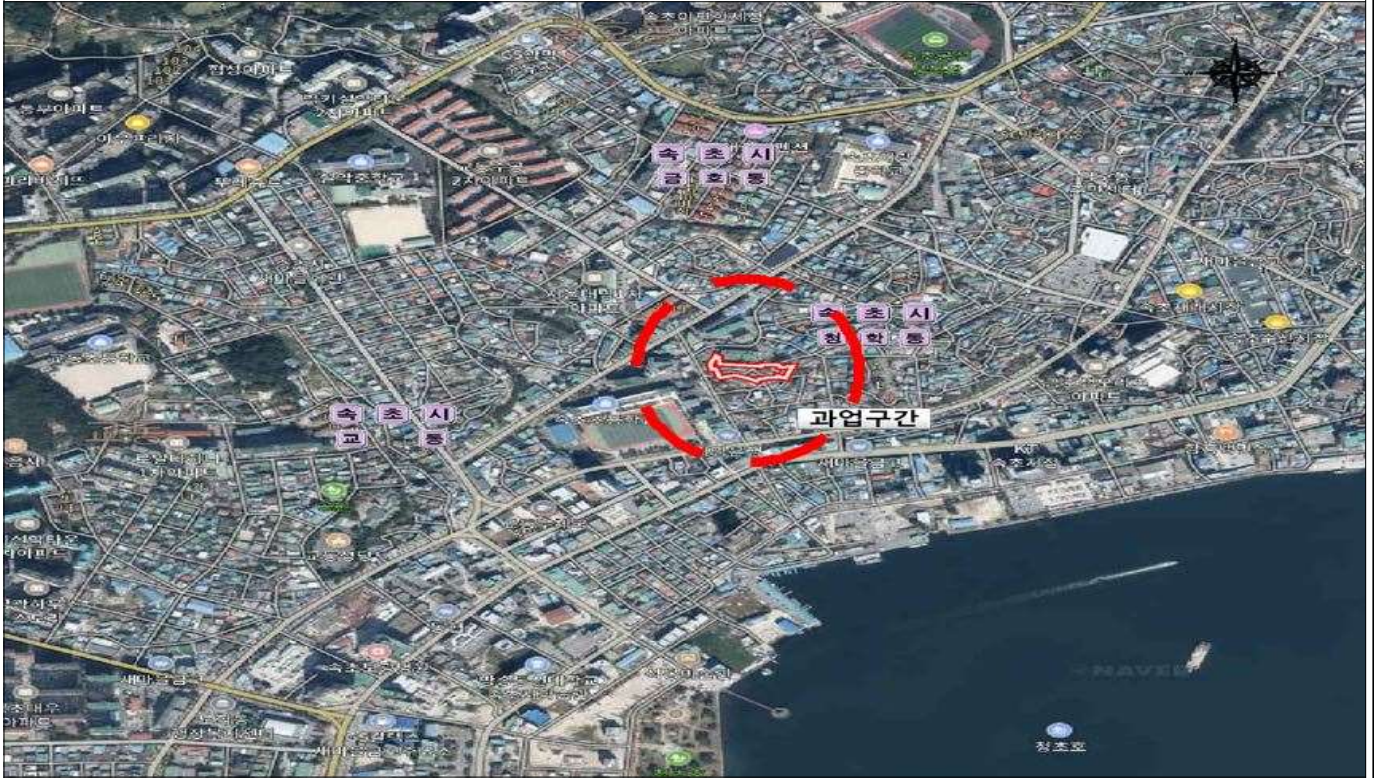
붙임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편입토지조서 1부. 끝.

<붙임1>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치 도



현 장 사 진



<붙임2>

편입토지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
합계		16필지		4,866	2,930			
1	속초시 청학동	642-60	대	170	170	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	박*선	
2	속초시 청학동	642-61	대	176	176	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-6	정*화	
3	속초시 청학동	642-62	대	163	163	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-62	이*삼	
4	속초시 청학동	642-68	대	144	144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	속초시	
5	속초시 청학동	642-63	대	134	134	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-63	이*수	
6	속초시 청학동	642-70	대	92	92	강원도 속초시 만천4길 28	신*현	
7	속초시 청학동	642-72	대	128	128	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6-7	조*길	
8	속초시 청학동	642-74	대	124	124	산179	박*원	
9	속초시 청학동	642-73	대	106	106	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산로 12, 101동 1402호	김*식	
10	속초시 청학동	634-54	대	96	96	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34-54	김*석	
11	속초시 청학동	634-28	대	188	188	강원도 속초시 선 사 로 4 길 32-1	김*광	
12	속초시 청학동	634-6	전	598	212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	속초시	
13	속초시 청학동	642-5	대	2,225	675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-57	주식회사 대명건설	
14	속초시 청학동	642-57	대	140	140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2-202	장*호	
15	속초시 청학동	642-69	대	254	254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2-202	장*호	
16	속초시 청학동	642-71	대	128	128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2-202	장*호	